

<별첨2>

자본시장 거래 안전성 제고 방안

2025. 8.



금융감독원

I. 금융투자부문 전자금융사고* 현황

* <전자금융사고 유형분류(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5 및 시행세칙 제7조의4)>

- ① 전자금융업무 지연·중단 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
- ② 전자금융업무 지연·중단 시간이 10분 이상이고 해당 전자금융서비스 가입자가 1만명 이상인 경우
- ③ 전산자료 또는 프로그램의 조작 및 오류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

□ (개요) 최근 5년간('20~'24년) 증권사에서 총 429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, 매년 발생건수도 증가하는 추세('20년 66건→'24년 100건)

- 특히, '25년 상반기중 다수의 전산사고*(58건)가 연이어 발생하여 투자자 등의 불안·불신이 높아진 상황

* 전년동기(40건) 대비 사고가 증가하였고, 주로 해외주식 브로커 전산장애 등 외부요인에 기인

※ 최근 5년간 금융권 전자금융사고 피해액은 294.6억원이며, 이중 금투부문(증권사)이 대다수(262.5억원, 89%)를 차지 ☞ 사고발생 시 매매체결 지연·중단에 따른 투자자 피해로 직결

금투부문(증권사) 전자금융사고 유형별 발생건수

사고유형	'20	'21	'22	'23	'24	'25 (1~6월)	계
프로그램 오류	23	31	27	41	34	32	188
외부요인	14	18	24	37	40	18	151
시스템·설비 장애	24	33	21	19	22	8	127
인적 재해	5	3	6	3	4	-	21
계	66	85	78	100	100	58	487

□ (증권사 규모별) 최근 5년간 35개 증권사에서 총 429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, 연평균 26개 증권사에서 86건(1사당 연간 3건)이 발생

- 대형사(자기자본 상위 10사)에서 총 202건(47%, 1사당 연간 4건)이 발생, 중소형사에서는 총 227건(53%, 회사당 연간 3건)의 사고가 발생
- 한편, 온라인 기반 증권사의 사고발생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리테일 부문(위탁매매) 경쟁 심화로 사고발생 가능성도 더욱 증대

- **(사고유형)** 최근 5년간 증권사의 전자금융사고(총 429건)는 주로 프로그램 오류(156건, 36.4%)로 인해 발생, 최근에는 외부요인(133건, 31%)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
 - 프로그램 설계·테스트 및 제3자 검증 미흡 등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장애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시스템·설비 장애는 감소
 - 최근 해외주식 거래가 대폭 증가하면서 해외 브로커·거래소 장애 등 외부요인에 의한 전자금융사고도 증가 추세

II. 주요 리스크 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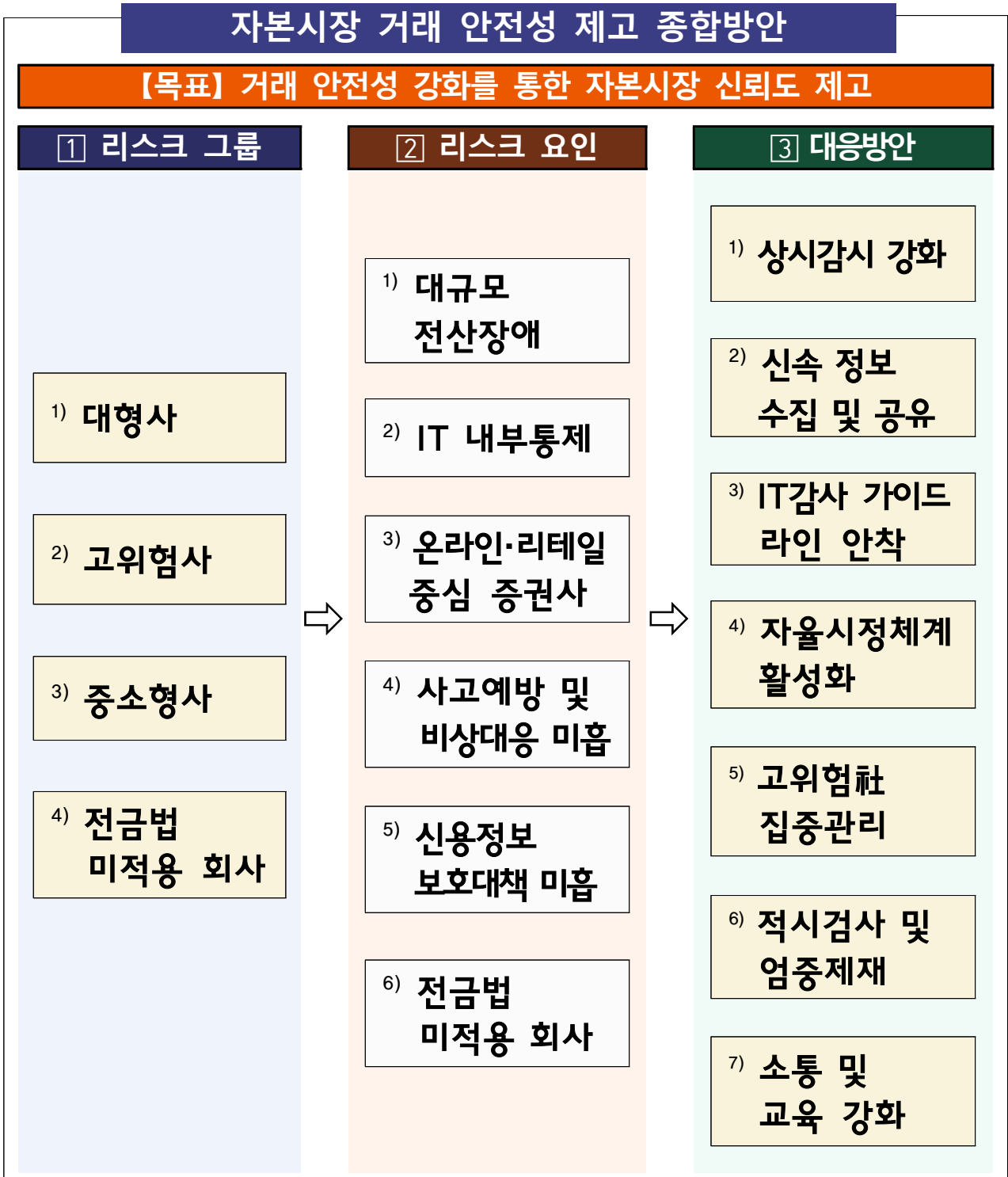
◆ 대규모 전산장애 등 투자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주요 전자금융거래 리스크 요인에 대해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

- 1 **(대규모 전산장애)** 금년중 거래소·증권사의 대규모 전산장애 발생으로 시장의 불안·불신이 확대됨에 따라, 금투회사의 전사적 대응이 필요
- 2 **(IT내부통제)** 지속적·반복적 전산사고는 주로 프로그램 오류 등 IT내부통제 미흡에 기인하고 있어 통제체계 개선이 필요
- 3 **(온라인·리테일 확대)** 전자금융거래 증가, 리테일 부문(위탁매매) 경쟁심화 등으로 온라인·리테일 중심 증권사의 리스크가 더욱 가중
- 4 **(사고예방·비상대응)** 전산사고 빈발요인에 대한 예방대책* 수립·이행 및 사고시 적시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계획(BCP)** 고도화 필요
 - * 프로그램 변경 통제, 해외주식 거래 관련 대체수단 확보 및 관리인력 확충 등
 - ** 자본시장(통합) 및 금투회사(개별)의 비상대응계획(BCP)
- 5 **(신용정보 보호대책)** 신용정보 유출·오남용 위험*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술적·물리적·관리적 보호대책 강화 필요
 - * 신용정보의 이동·집적·결합·활용 증가, 침해사고 빈발 등
- 6 **(전금법 미적용社)** 안전성 관리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 금투사는 정보보호 측면에서의 보호대책 마련·준수 필요

Ⅲ. 거래 안전성 강화 방안(주요내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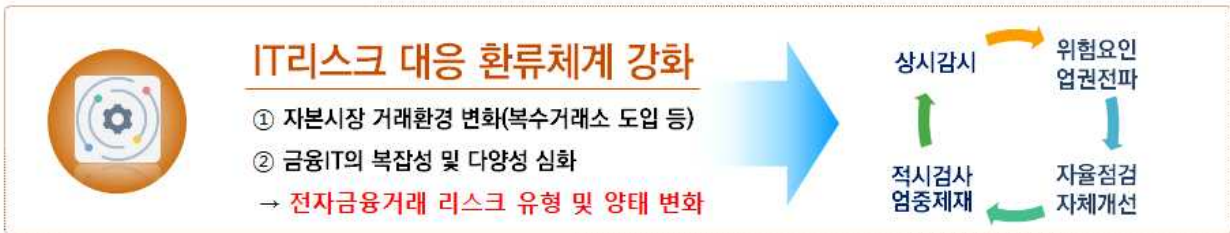
◆ 금감원은 그룹별·상황별 맞춤형 대응수단(Policy Mix)을 적용하여 전자금융사고 등의 리스크 예방 및 적시 대응체계를 즉시 시행 예정

※ (대형사 예시) 평상시 ③,④,⑦ 방안을 적용하고, 필요시 추가 수단(⑤,⑥) 조치



① **(상시감시 강화)** 금투회사의 IT·정보보안 리스크를 정기·수시로 정밀분석하여 선제적 위험요인 식별, 유관부서·업권 전파, 자율시정, 현장검사 연계 등 리스크 대응 환류체계 기반 구축

- 특히, 관련 통계(사고현황, 전자금융거래·고객규모 변화 추이 등), 유관기관 분석자료(금보원, KISA 등), 언론동향 등 내·외부 정보를 활용한 연계 분석을 통해 위험요인 및 고위험군 식별 역량 강화



② **(신속 정보수집·공유)** 상시감시, 핫라인(금투회사·유관기관), 언론 등을 통해 정보사항을 적시 수집·분석

- 중요 사항(위험요인, 사고·모범사례 등)은 신속히 업권에 전파(CPC, 간담회 등)하여 자율시정 및 유사사고 재발방지 유도

③ **(IT감사 가이드라인 안착)** 전자금융사고 빈발요인에 대한 선제적 예방 대책 수립·이행 및 비상대응계획 개선 등을 위해 IT감사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금투회사의 내부통제체계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지도

- 서면점검, 현장검사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우수사례를 발굴·공유하는 한편,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등 요구

④ **(자율시정체계 활성화)** 상시감시 등을 통해 수집·분석된 리스크 요인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금투회사가 적시에 자율점검·자체 개선을 실시하는 등 자율시정체계 활성화

- 제도도입 등 환경변화에 따른 리스크 요인 관련 점검항목을 마련·배포(금감원, 수시)하여 금투회사의 자율적인 점검·시정 유도
- 리스크 규모 및 파급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금법 미적용 금투회사(운용사 등)에 대해서는 「자가진단 체크리스트」를 배포하여 필수 준수사항을 연1회 이상 주기적 점검·시정 지도

- ⑤ **(고위험사 집중관리)** 상시감시 등을 통해 선별된 고위험사(전산사고 빈발 등)를 대상으로 경영진 면담, 전사 차원의 IT내부통제 개선, 적정자원(인력, 예산 등) 투입 등 리스크 감축을 위한 개선조치 실시
- 전담 검사역의 집중감시와 함께 리스크 수준(전산사고 빈도·정보유출 발생 등)에 따라 단계별 조치(자율시정, 경영진 면담, 현장검사) 예정
- ⑥ **(적시검사·엄정제재)** 리스크 대응수준 미흡 또는 중대사고 발생 금투회사에 대해 적시검사(검사주기 단축) 실시 및 엄정한 제재 실시
- 또한, 검사를 통해 파악된 모범·취약사례는 간담회·워크숍 등을 통해 업권에 전파하고, 제도상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신속한 개선도 추진
- ⑦ **(소통 및 교육 강화)** 경영진(CEO, CIO 등)과의 소통강화(간담회 등)를 통해 전사차원의 거래 안전성 강화와 관련된 공감대 형성 및 주의 환기 유도
- 반복적 위규사항, 중대 사고요인, 모범사례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소통채널(CEO레터, 워크숍 등)을 통해 업권에 적시 공유·전파
 - 아울러,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금투부문 임직원 대상 IT·정보 보안 내부통제 교육을 실시하여 업권 전반적인 역량 강화 지원
 - 그간 규제 사각지대(Gray Zone)로 여겨졌던 전금법 미적용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물적설비 유지요건 등 필수 준수사항 위주로 별도 교육(필요시 온라인 교육 활용) 실시 예정